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난민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성재 (법무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난민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「난민법 시행규칙」에 규정된 난민조사관의 자격기준을 이 영에 상향규정하며, 난민전담공무원은 난민심사관을 보조하여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난민심사관은 난민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, 난민신청자 면접 시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를 구체화하고 화상면접의 화상면접을 시행함에 따라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다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기타사항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난민전담공무원의 자격)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담공무원(이하 “난민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
2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10조제2항”을 “법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난민심사관은”을 “난민심사관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난민심사관”을 각각 “난민심사관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난민심사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 또는 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

다.

⑥ 난민전담

수행소

어

다쳤을 것

국

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u><신 설></u>	<u>제6조의2(난민전담공무원의 임용)</u>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난민전담공무원(이하 “난민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1.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2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
제7조(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)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(이하 “난민심사관등”이라 한다)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,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, 일시 및 장소 등을	제7조(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) ① ————— ----- -----

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
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
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
두로 출석요구를 사

② 난민심사관

대하여 면

그 내용

난

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
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⑤ 난민심사관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하여 법 제8조제1항 접 또는 이 영 제 른 면담을 하

⑥ 난민

관을

공무원 또는 「공무원임용령」
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
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
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
추어야 한다.

1.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
종사하였을 것
2.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
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난민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165